

●보건복지부령 제1106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04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의 장
-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의료기관의 장
- 4.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의 장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확인검사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확인검사 기관	<input type="checkbox"/> 질병관리청 <input type="checkbox"/> 보건환경연구원() <input type="checkbox"/> 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의과대학() <input type="checkbox"/> 질병관리청이 지정·고시하는 확인검사기관()
------------	--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확인검사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확인검사 기관	<input type="checkbox"/> 질병관리청 <input type="checkbox"/> 보건환경연구원() <input type="checkbox"/> 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의과대학() <input type="checkbox"/> 질병관리청이 지정·고시하는 확인검사기관()
------------	--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확인검사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확인검사 기관	<input type="checkbox"/> 질병관리청 <input type="checkbox"/> 보건환경연구원() <input type="checkbox"/> 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의과대학() <input type="checkbox"/> 질병관리청이 지정·고시하는 확인검사기관()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 의뢰에 따라 확인 검사를 해야 하는 확인검사기관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의 장과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의 장을 추가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 감염 여부에 관한 확인검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